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해소방안

- 협상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lving Siting Conflicts of Urban Unwanted Facilities

- Focusing on Negotiating Method -

강 성 철(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 상 구(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This article is aimed to find what kind of negotiation methods is to raise possibilities of agreement-reaching under conflicts of urban unwanted facilities.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1. When one side negotiator adhered to tough strategies for one's benefits, though the other side used reciprocal strategies for mutual agreement. Mutual agreements were not reached.
2. Under the mediator, each negotiator used tough strategies to make mediator know one's interests and benefits. At that time the mutual agreements were impossible.
3. When each negotiator used reciprocal strategies, mutual agreements were reached successfully.

I. 서 론

이제까지의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적이었던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은 지방화·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분권화 될수록 계산·판단·설득 등의 분석적 갈등해결방식보다는 합의·협상·정치 등의 비분석적 갈등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Thompson, 1959: 186-188). 그리고 이러한 합의·협상 및 정치 등을 통한 갈등해결방식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결정과정의 민주화”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 결과 이해관련자들이 상호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가지 못한 채, 도시비선호시설을 비롯한 도시문제의 해결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밀어부치기식의 물리적 수단에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 관련된 이해관련자들에 관한 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지니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로(rational agent) 전제하고 이에 입각하여 합의 형성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합의달성을 여부는 협상당사자들이 제안을 교환하고

공동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과정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한다(송승종, 1997: 254). 그리고 이상과 같은 전제와 가정하에서 왜 어떤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경우는 합의 형성에 성공하고, 반면에 어떤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경우는 합의 형성에 실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¹⁾ 따라서 성공(합의 도출)과 실패(합의 미도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의 형성방법(협상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협상방법의 채택이 다양한 협상결과 가운데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가장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사례로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쓰레기소각장과 금정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내 화장장조성 갈등사례로 한정한다. 이 두가지 사례를 채택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부산지역에서 겪은 입지갈등사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곳이며, 아직도 갈등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시가 입지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II. 현존 참여방법과 협상방법의 도입필요성

1. 현존 이해관계자의 참여방법

도시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에서 나오므로 이를 지역주민을 비선호시설 입지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입지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김형구, 1994a: 84).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협상이론 및 환경행정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Yankelovich, 1999; 조택, 1995; 정희성, 1994; Diesing, 1962). 즉,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적절한 참여와 이들과의 대화는, 이들의 반대를 감소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입지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조택, 1995: 99). Diesing(1962: 1-3)도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결정과정과 같은 의사결정유형에서 합리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제도적 구조가 마련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절차적·제도적 구조의 하나가 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Yankelovich(1999: 256)도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대화(dialog)라고 지적하면서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화의 세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정희성(1994: 104)은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우리나라 입지정책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참여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현존 우리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방법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이의 보완방안으로서 협상의 도입필요성을 논의한다.

- 1) 본 논문은 비선호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비선호시설 입지결정방식은 소위 DAD(decide-announce-defend)라는 전통적 방법에 의존하여 왔는데, 이 방법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소수의 입지결정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고, 그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방법이고,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도 비선호시설을 입지시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 2) 그것은 첫째, 참석자들은 대화과정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둘째, 참석자들은 상대방의 말을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하며 셋째, 갈등이나 오해의 원인이 되는 참석자들의 假定은 공개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Yankelovich, 1999: 256).

여기서 우리 나라의 현행 환경관련법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평가서 초안을 지방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지역내 주민들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주민으로 하여금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임의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시설의 위치, 규모, 면적, 설치시기,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관리시설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기회가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받고 있다. 시설지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관계전문가를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절차적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김렬, 1995: 1164).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규모가 1일 처리능력 300톤규모 이하일 경우 동법에 당연히 적용되는 시설물은 아니나, 해당 지방정부가 조례로써 시설물을 입지선정계획의 대상물로 정할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례로 적용대상 시설물로 정하여졌다면,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소각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입지선정계획을 지방정부는 결정·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지방정부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입지선정계획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³⁾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제도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다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적·행정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권리는 사실상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첫째,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평가서 초안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부기관내 협의내용을 주민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가 없어 협의내용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주민의 참여도 단순한 열람절차만이 부여되어 의견제출, 처리결과통지 등 실질적인 참여절차의 보장은 「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시설지구지정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김렬, 1995: 1164-165).

셋째, 공청회나 공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공람기간은 7-30일 이내로 제한하여 비전문가인 지역주민들이 공람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마저 3시간 정도의 회의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대전직할시, 1991:

3)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정원이 제한되며,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의 위촉기준은 지방의원 2인, 공무원 2인, 지방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3인, 단체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다(김정훈, 1996: 69-70).

183; 김도희, 2001: 87에서 재인용). 넷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9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고, 게다가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지나친 관주도형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정성을 지녀야 할 전문가를 단체장이 선정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중립적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김정훈, 1996: 69-70).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을 대등하게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비판으로서 Matheny & Williams(1985: 70-80)는 입지선정과정에서 분명한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배분적인 의사결정⁴⁾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등하게 대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협상방법의 도입필요성

우리 나라의 경우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제도적 보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상절차는 최근에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정부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9조 및 제30조),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중앙과 지방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 재정 등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의 추진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제반 구제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도 현재로서는 구속력의 결여로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며(황재영, 1999: 167-184), 더욱이 이러한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의 방법은 정책이나 시책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한 분쟁이나 피해에 대해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분쟁이나 피해를 사전에 조정·협상하기 위한 장치로는 볼 수 없다(김렬, 1995: 1163). 게다가 환경부는 비선호시설의 주요 사업시행자이며 따라서 갈등당사자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소속하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조정자로 나설 경우에는 중립적인 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김홍식·정형덕, 1993: 154). 따라서 사후적인 해결수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전적인 단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적 또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렇게 본다면,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분쟁의 해소 및 처리를 위한 메카니즘은 사후적인 해결·구제수단에 치중하기보다는 환경문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시 등 참여의 기회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전적인 절차제도⁵⁾가 우선되어야 한다

-
- 4) 도시비선호시설은 모든 지역에 설치될 수 없고, 시설고유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정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입지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8: 28). 이러한 이유로 시설입지에 따른 불이익이 특정지역에 응집되는 반면, 그 혜택은 전체 사회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비용과 편익의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다(O'Hare, 1977: 67-88). 이러한 이유로 도시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 정책은 배분 정책이 되는 것이다.
 - 5) 협상은 갈등의 발생 이후에 사후적 관리의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입지결정방식에 따를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은 후보지가 선정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정보의 제공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입지선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때부터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상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비용을 증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이달곤, 1996: 340-341).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전적 절차제도

(김렬, 1995: 1155).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인 절차제도의 한 방법이 협상이다. 그리고 사전적 절차제도로서의 협상은 광범위한 이해관련집단이나 조직 등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협력을 구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일종이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호이득을 가져오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 박종화(2000: 217)는 협상의 정도와 갈등해결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흥미롭게도 협상의 정도와 갈등해결 여부와의 사이에는 상당히 강한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협상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난 사례의 경우에 해결로 나타난 경우가 69%, 중간으로 나타난 경우가 23%, 그리고 미해결로 나타난 경우가 8%이었다. 그리고 협상의 정도가 중간인 사례의 경우에 해결로 나타난 경우가 38%, 중간으로 나타난 경우가 38%, 그리고 미해결로 나타난 경우가 24%이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강도가 미약한 사례의 경우에 해결로 나타난 경우가 20%, 중간으로 나타난 경우가 50%, 그리고 미해결로 나타난 경우가 30%이었다.

〈표 1〉 협상의 정도와 갈등해결 여부

협상의 정도	갈등해결의 여부			소 계
	해 결	중 간	미 해 결	
강	44(69%)	15(23%)	5(8%)	64(100%)
중	13(38%)	13(38%)	8(24%)	34(100%)
약	2(20%)	5(50%)	3(30%)	10(100%)

자료: 박종화, 2000: 217.

이와 같은 결과는 해결 및 미해결의 여부와 합의형성으로 이르는 제반 노력들, 예컨대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설명회 개최, 토론 등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방법의 적용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III. 협상의 개념과 협상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1. 협상의 개념

환경정책의 결정에 이르기 위한 사전적인 단계에서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바로 협상이다. 협상은 행정기관이 공식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환경정책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의 대표자들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들여, 이들이 보다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에 도달하게 하고, 이렇게 작성된 정책대안을 행정기관이 수용하는 정책결정방식을 말한다(최병선, 1992: 751). 그러므로 Caldart & Nicholas(2000) 등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데 협상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협상은 관련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꺼이 수용할

로서 협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Raiffa(1982: 3)는 협상방식이 전통적 입지결정 방식의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 있는 더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게다가 협상은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대결보다는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lyman(1995: 38-48)도 협상당사자들간의 공동작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상당사자들간의 공동작업은 각 협상자들로 하여금 통합된 공동이익을 창출하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하에서 협상의 개념을 정립하면, 먼저 Gulliver(1979: 35)는 협상을 “서로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Pruitt(1993: 1-2)는 협상을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의 이해상 반을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안성호(1994: 40)는 협상은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갈등당사자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만나 대립적 견해와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원망⁶⁾을 충족시키려는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박호숙(1995: 14)은 협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간에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상은 “주고 받는”하나의 교환관계로서 서로간에 받아들일 만한 제3의 대안도출을 위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협상이란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둘 이상의 의사결정주체가 임의로 상반되는 이해를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상호 전략적으로 조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화 외, 1996: 609-610; Chang Wook, 1988: 68-69).

2. 협상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아직까지 협상의 방법이 보편타당성 있는 일반론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며, 이론적인 기초도 대단히 취약한 설정이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토대로 한 형태적인 접근도 소위 “표준화된 협상양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권원용, 1993: 9). 정은성(1993: 142)에 의하면 지방화·민주화 시대인 지금에는 협상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접근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론서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비이론적 접근을 한 저서들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몇번에 걸쳐 협상에 관한 논문이 나오기는 했으나, 계속적 발전을 이루지 못해 아직 협상의 기본개념의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협상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정리하면, 송승종(1997)의 상호전략, 주도전략, 강경전략, 박호숙(1995)의 동맹구조의 형성, 조정자의 개입, 여론화, 국면전환, 박종화 외(1996)의 제로섬게임, 탈제로섬게임, 이달곤(1996)의 배분적 협상, 융화적 또는 통합적 협상, 원칙협상, 안성호(1994)의 입장협상, 원칙협상, Mangin(1990)의 계층주의적 갈등 해결방법, 평등주의적 갈등해결방법, 김종후 외(1994)의 조정방법, 김홍식·정형덕(1993)의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의 참여, 당사자끼리 직접협상, 지방의회의 중재, 중앙정부의 관여방법, Weber(1999)의 제3자 참여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협상방법들 중에서 송승종(1997)의 상호전략, 주도전략, 강경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6) Kharbanda & Stallworthy(1991) 등은 협상을 동의를 구하는 관리기술로 보고서 협상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갈등내지는 충돌상황에 있지만, 협상상대방을 우정있는 관계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송승종(1997: 253-254)은 군비통제에 관한 협상방법을 논의하면서 협상방법으로서 상호전략(Reciprocal Strategies), 주도전략(Initiative Strategy), 강경전략(Tough Strategies) 등을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호전략(Reciprocal Strategies)은 협상을 쌍방간의 교환 및 타협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상호전략은 “협상상대방의 과거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결정되는 대략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교환”이라고 하는 조건성(contingency)과 동등성(equivalence)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협상방법으로서 상호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자들이 공동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협상상대방과 상호작용을 계속할 것이라는 신뢰와 상호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양보의 상호주의 원리는 느슨한 의미에서 협상의 해법이면서도 협상문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양보가 협상자들 사이에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협상상황에서 통용되는 양보의 논리는 직설적으로 “내가 양보하면, 상대방도 양보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명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⁷⁾

주도전략(Initiative Strategy)은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유용한 메카니즘으로 상호전략의 대안적 접근방법이다. 주도전략은 어느 일방이 먼저 양보행동을 취하고, 이를 쌍방이 상호수용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면에서 상호전략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전략이 어느 일방에 의한 양보에 의존하는 반면, 주도전략은 이를 초월한 그 이상의 차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주도전략은 협상에 있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주도전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진퇴양난에 처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키 위한 새로운 일방적 양보제안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주도적 양보전략은 선의의 모범을 보이고, 상호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합의 달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 협상상대방이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응하는 양보초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송승종, 1997: 255-256).

마지막으로 강경전략(Tough Strategies)은 때때로 고압적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며 양보를 기피한다. 따라서 강경전략은 협상에서 보다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과시하게 되면 합의를 바랄지도 모르는 협상상대방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강경전략은 협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세한 힘의 자원을 기껏이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를 협상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경전략은 Mangin(1990: 36-37)의 계층주의적 갈등해결방법 및 쇠영기·유범상(2000: 56-57)의 권위주의적 갈등해결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Axelrod(1984: 97-109)는 이를 장군명궁(tit-for-tit) 협상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군명궁(tit-for-tit) 협상방법의 본질은 상호주의로서 상대방의 협력에 대하여 협력, 상대방의 비협력에 대하여 비협력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Harsanyi(1977)에 의하면 협상의 현실에서는 양보의 상호주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보의 상대주의가 통용된다고 지적한다. 즉, 비합의로 인하여 더 많은 손해를 입을 협상자가 먼저 양보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내가 양보한 만큼 상대방도 양보해야 한다”는 준칙이 아니라 “협상의 결렬로 인하여 손해 볼 협상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원리로 특징지워진다(박효종, 1996: 148-149에서 재인용).

IV. 분석의 틀과 협상사례의 분석

1. 분석의 틀

입지갈등이란 “공익을 탐색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양립불가능한 목표추구 때문에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대립적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적 갈등상황은 게임이론의 여러 모형중에서 Tucker(1965: 94-102)가 고안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적용하여 시행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대립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김인철·최진식, 1999: 101-102에서 재인용).

〈표 2〉 죄수의 딜레마게임

시행주체		합 의	비 합 의
지역주민	합 의	Ⓐ(편의, 편의)	Ⓑ(비용, 편의)
	비 합 의	Ⓒ(편의, 비용)	Ⓓ(비용, 비용)

비고: ()안의 원쪽은 지역주민의 비용(재산권 침해)·편익(보상), 오른쪽은 시행주체의 비용(보상감수)·편익(행정서비스 개시)를 의미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주체와 지역주민이 각각 비용을 감수하면서 합의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편익을 낳는 결과①를 얻게 된다. 그러나 양자가 상대방도 자신과 같이 비용을 감수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이와같은 결정(상호전략)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한쪽의 이타적 결정(상호전략/주도전략)과 다른 한쪽의 이기적 결정(강경전략)으로 이루어지는 유형④와 ⑤의 경우는 현실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는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⁸⁾ 이해관련자들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비합의 결정(강경전략)을 내릴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양측의 결정으로 유형④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입지갈등을 해소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무엇으로 유형④에 치우치는 결정경향을 유형⑤의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입지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 원인은 바로 비용과 편의의 불균형이다. 그리고 비용과 편의의 상태유형에 따라서 각 협상당사자들의 결정유형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주체의 경우 비용(보상감수)과 편익(행정서비스 개시)이 동일하다면 상호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주도적으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주도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합의하는 것을 꺼릴 것이며, 당연히 강경전략으로 결정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경우도 비용(재산권 침해)과 편

8)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 관련된 이해관련자들에 관한 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데 일차적 관심을 지니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로(rational agent)로 전제하였다.

익(보상)이 동일하다면 상호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주도전략,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강경전략을 결정할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비용과 편익에 따른 협상당사자들의 결정유형

비용과 편익의 상태	협상당사자들의 결정유형
비용 = 편익	상호전략
비용 < 편익	주도전략
비용 > 편익	강경전략

2. 협상사례의 분석

여기서는 이해관계자들인 지역주민, 시행주체인 부산환경개발(주), 부산시 등을 대표한 협상대표자들이 협상과정⁹⁾에서 특정한 협상전략을 왜 선택하는지, 협상대표자들이 선택하는 협상전략들의 결합이 어떤 과정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협상대표자들이 왜 특정 협상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표 2〉의 분석내용에 의거하여 이해관련자들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어떤 협상방법들의 결합이 합의 형성의 가능성을 가장 제고시켰는가를 분석한다.

1) 사하구 신평동 쓰레기소각장

(1)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을 우려하여 시행사(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지역주민, 사하구청, 부산시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소각장은 신평·장림공단내 전용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장에서 반경 2km이내에는 약 1만세대의 주거지가 산재해 있다.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부산시 및 환경처(부)의 권유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991년 9월에 부산상공인 275명이 출자해서 설립된 (주)부산환경개발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주)부산환경개발은 사하구 신평동에 하루 300톤 규모의 가연성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 공사를 1994년 8월에 착공하였다(배준구, 1997: 85).

(2) 협상대표자들이 선택한 협상방법

부산시는 1996년 2월에 소각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 지역주민, 부산시, 사하구청이 참가하는 “4자 협의회”를 결성해 놓고도 그동안 한차례의 회합도 주선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알려지자 동년 6월 11일 시청회의실에서 처음으로 “4자 협의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1996년 7월 9일 부산시 환경녹지국장 주재하에 제2차 공동협의체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6명과 회사대표 5명, 사하구 사회산업국장 참석하에 협의회를 가졌으나, 서로 쌍방의 주장을 고수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각장 시험가동은 절대 불가하다는

9) 협상과정은 시행주체와 지역주민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논의한다.

입장이며, 부산환경개발측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설 가동을 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1·2차 협상과정에서 주민측 협상대표자는 강경전략을 사용하였고, 시행주체측 협상대표자는 양보전략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민측 협상대표자들이 강경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소각장입지 결정내용이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소각장입지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가 막대하리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행주체가 양보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소각장건설을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지적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통한 시설가동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협상방법으로서 강경전략과 상호전략의 결합은 합의 협성에 실패를 초래하였다.

1996년 8월 14일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민간환경단체(녹색연합) 주관으로 주민대표와 부산환경개발대표 및 부산시, 사하구청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8월 29일에 다시 녹색연합 주최의 "신평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모임"을 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녹색연합이 제안한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참가자들이 동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신평소각장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동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리고 1996년 11월 19일 사하구청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은 입지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를 원칙적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산환경개발측은 시험 가동 뒤 시료를 채취해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배출여부를 체크하여,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중재에 나선 녹색연합은 신평소각장의 제반문제를 종합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전문연구팀"을 발족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지역주민들은 가동을 전제로 한 연구팀은 안 된다며 반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3·4차 협상과정에서는 제3자 중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주민측 협상대표자와 시행주체측 협상대표자 모두는 강경전략을 구사하였다. 이같이 양자 모두가 강경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각자의 이해와 의지를 제3자인 중재자에게 강력히 알려 자신의 편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강경전략의 결합은 합의 형성의 실패를 가져왔다. 또한 그동안 소각장가동과 관련하여 중재활동을 벌여온 녹색연합은 양자에 의한 중재안 수용거부로 인하여 중재활동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1여년 동안 소각장 가동을 반대해 온 주민대표들은 1997년 11월 5일 소각장 운영업체인 부산환경개발측과 제5차 협상을 통하여 "소각장 가동 합의안"이라는 협상안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2년 이상 악화일로를 겪던 신평소각장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제5차 협상에서 주민측 협상대표자는 "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것", "시험가동결과 이상이 없을 때는 정상가동", "주민들의 농성을 해제" 등을 양보하였고, 시행주체측 협상대표자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하는 국내 공인기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성능검사결과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ng 이상일 경우, 가동을 중단하며, 6개월 이내 시설보수 후 재측정 결과 0.1ng 이상 배출되면 공장가동 포기", "주민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및 고소의 취하"라는 양보조치를 취하였다(김도희, 2001: 118-305에서 재구성). 이상과 같이 제5차 협상과정에서는 주민측 협상대표자와 시행주체측 협상대표자는 모두가 양보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잠정 합의안"이라는 협상결과를 도출하였다.¹⁰⁾ 제5차 협상에서 양자가 상호양보전략을 선택

10) 주민대책위가 이날 수용한 합의안은 ①지역주민들이 선정하는 국내 공인기관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교통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②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③성능검사결과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ng 이상일 경우, 가동을 중단하며, 6개월 이내 시설보수 후 재측정 결과 0.1ng 이상 배출되면 공장가동 포기 ④시험가동결과 이상이 없을 때는 정상가동 ⑤환경영향평가 계약과 동시에 주민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부산환경개발측은 주민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및 고

한 이유는 그동안의 협상실패로 인하여 양자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 시행주체측은 소요공사비용이 1997년 8월에 506억원에 이르렀으며, 공사가 완료된 1996년 4월부터 매월 약 15억원(인건비, 사업비 이자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시행주체인 부산환경개발은 1996년 6월 23일에 주민대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주민대표 11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고발하였다(배준구 1997). 그리고 주민대표측은 오랜 저항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게다가 시행주체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따라서 양자 모두 더 이상의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결국 상호비용을 감내하면서 협상안을 도출하였던 것이다.

2) 금정구 두구동 화장장조성

(1) 사업 개요

지난 1987년 11월 부산진구 당감동화장장 폐쇄이후 1992년까지 5년여 동안 마산 등 타지역에서 구결화장을 해온 부산시는 화장장건립의 1993년내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하는 등 다소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부산시는 1992년 12월부터 그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지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대상 후보지중에서 시립공원묘지내 납골당 부근을 최적의 대상지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시가 건립할 화장장은 시립공원묘지 납골당 뒤쪽 7천 6백평 부지에 건물 1천평, 화장로 15기 규모이며 총 26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부산시는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로 건물 등 3개동을 신축하고 최신 집진시설 등을 갖춰 냄새, 소음, 진동, 굴뚝이 없는 무공해화장장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산시가 화장장건립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1993년 3월 20일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의 저항집회가 본격적으로 일으나기 시작하였다(김형구, 1994a: 129-131).

(2) 협상대표자들이 선택한 협상방법

1993년 10월초까지 지역주민들의 시위는 76회에 이르렀고, 부산시의 강경한 추진의지속에 서 지역주민들은 부산시와의 공식대화를 제의하여, 동년 11월 10일 부신시측과 첫 공식협상을 가졌다. 제1차 협상과정에서 주민측 협상대표자들은 ①부산시의 주민의견수렴절차무시 ②화장장건립과 관련한 시당국의 과행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경위 ③화장장후보지 대안추진용의 등 8개항목을 협상안건에 올렸으나, 부산시는 이에 대해 여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현 후보지 결정 이전에 실시했으며, 현재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재검토는 불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선에서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양협상당사자들은 모두가 강경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제1차 협상에서는 협상안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부산시의 화장장공사 강행에 따라 사태가 급박해짐으로써 지역주민 70여명은 부산카톨릭센타에서 10일간의 단식농성을 하면서 입지반대의 관철의사를 표시하였다. 단식농성이 계속되는 부산카톨릭센타에서 카톨릭부산교구청의 중재로 부산시와 주민대표사이에 제2차 협상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주민측 협상대표자는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지역을 대체후보지로 제시하여 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산시측의 수용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부산시는 주민측 협상대자들이 제시한 협상안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제2차 협상에서 주민측 협상대표자들은 양보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부산시는 강경전략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먼저 지역주민측 협상대표자가 강경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화장장건립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와 이에 대한 시행주체측의 보상이 전무하였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그리고 시행주체인 부산시가 강경전략을 끝까지 선택한 이유는 화장장이 건립되는 후보지가 시유지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현 후보지에서 실패한다면 화장장건설은 영원한 미결과제로 남는다는 절박한 인식때문이었다.

부산시의 화장장공사 강행과 2차에 걸친 협상실패에 따라 1993년 11월 19일 지역주민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는 부산시의 승소로 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약 1년간에 걸친 시위로 인하여 지역주민 5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입건 되었으며, 1백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뒤 훈방조치 되었다. 이상과 같이 화장장사례에서는 부산시와 지역주민들간에 실질적인 의미의 협상이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첫째, 입지예정지가 시유지인 점과 둘째, 고속도로를 통하여 장의차량통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상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계획자체의 백지화 또는 인근지역(화동동)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까닭에, 협상과정에서 부산시는 자신의 입장고수만을 준수하게 되었다. 때문에 입지반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으며, 부산시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김형구, 1994a: 132-133, 180-181).

V. 결 론

사회가 분권화 될 수록 합의·협상 등의 비분석적 갈등해결방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결정과정의 민주화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 결과 도시비선호시설을 비롯한 도시문제의 해결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밀어부치기식의 물리적 수단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왜 어떤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경우는 합의 형성에 성공하고, 반면에 어떤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경우는 합의 형성에 실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협상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협상방법의 채택이 다양한 협상결과 가운데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가장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 사례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강경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협상안의 도출은 불가능하였다. 둘째, 제3자 중재방법에서는 협상당사자들이 각자의 이해와 의지를 제3자인 중재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강경전략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3자 중재방법에 의한 협상안의 도출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협상당사자들이 모두 상호주의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는 협상안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특히 시행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양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주의 전략을 구사할 경우, 지역주민측 협상대표자들의 신뢰¹¹⁾를 획득하여 협상안의 도출이 용이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협상방법과 협상의 성공 및 실패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물론 협상에서 협상당사자들이 채택하는 협상방법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제분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창출된 산물이므로, 협상방법 자체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갈등적·적대적 상황에 처한 협상당사자들이 극단적 시위나 강제력의 동원보다는 협상을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키로 상호 합의한 것이 협상이라고 본다면, 협상의 과정과 맥락에서 볼 때, 협상방법이 협상의 최종적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방법에 대한 연구는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결정이론과 실제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협상결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합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11) Provis(2000: 145-158)는 협상에 있어서 협상당사자간의 신뢰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협상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가 존재할 때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Fells(1993)는 협상과정에 있어서 신뢰의 발전(Developing Trust in Negotiation)이라는 연구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신뢰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신뢰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과정의 한 단계라고 지적한다.

참 고 문 헌

- 국토개발연구원. (1988). 광역 도시시설의 입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권원용. (1993).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협상론의 도입을 위한 시론적 고찰. 「국토계획」, 28(4). 대한국토·계획학회지.
- 김도희. (2001).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렬·고재경. (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주민 참여형태와 정부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 김렬. (1995). 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참여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한국행정학보」, 29(4).
- 김인철·최진식. (1999).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3).
- 김정훈. (1996). 고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입지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30(1).
- 김종후·전현원·강동희. (1994).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집단 이해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6(1).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형구. (1994a). 도시 비선호시설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주민저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 . (1994b). 도시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환경연구노트 제3호. 인제대학교 환경연구소·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홍식·정형덕. (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배준구. (1997). 지방자치후 정부간 갈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9(1)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박종화. (2000).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과 중첩적 합의. 「국토계획」, 35(5). 대한국토·계획학회지.
- 박종화 외. (1996). 「지역개발론」. 서울 : 박영사.
- 박호숙. (1995). 지역갈등과 그 해소방안. 「경남개발」, 13. 경남개발연구원.
- 박효종. (1996). 합리적 노·사협상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진주지역 상평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3). 한국정치학회.
- 송승종. (1997).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1). 한국정치학회.
- 안성호. (1994).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와 중앙정부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3(3). 한국행정연구원.
- 이달곤. (1996). 「협상론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서울 : 법문사.
- 정은성. (1993). 정책강의와 연구를 위한 협상이론의 유용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
- 정희성. (1994).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평가원구원.
- 조택. (1995).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 원인과 극복방안. 「고시계」, 40(2). 한국고시학회.

-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 최영기·유범상. (2000). 사회협의시스템과 노사관계의 갈등조정: 한국에서의 사회적협의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9(4). 한국행정연구원.
- 황재영. (1999).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지역분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3(1). 한국지방정부학회.
- 대전직할시. (1991). 자치단체내 지역집단 이해조정 방안: 대전직할시 쓰레기장기위생 매립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지역이기주의 효율적 극복방안」, 지방행정발전 세미나 보고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 Axelrod, R. (1984). Perfect Equilibrium in a Bargaining Model. *Econometrica*, 50.
- Caldart, Charles C., and Nicholas A. Ashford. (2000). Negotiation as a mean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licy..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Vol. 14, No. 3.
- Chang, Wook. (1988). Tribute to John William Dyckman.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V. 7, N. 2.
- Clyman, Dana R. (1995). Measures of Joint Performance in Dyadic Mixed-Motive Negoti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64, No. 1, pp. 38-48.
- Diesing, Paul. (1962). *Reason in Society: Five Types of Decisions in Their Social Context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Fells, Ray. (1989). Managing Deadlocks in Negotiation. *Management Decision*, Vol. 27, No. 4.
- Gulliver, P. H. (1979). *Disputes and Negotia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Harsanyi, J. C. (1977). *Rational Behavior and Bargaining Equilibrium in Game and Social Situ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harbanda, Om P, Stallworthy, Ernest A. (1991). NEGOTIATION: AN ESSENTIAL MANAGEMENT SKILL.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6, No. 4.
- Mangin, R. M & Steger, Mary Ann E. (1990). The T/F/W Environmental Policy Negotiation of Washington State. Mills, Miriam K. (ed.), *Conflict Resolution and Public Policy*. New York : Green Wood Press.
- Matheny, Albert R. & Williams, Bruce A. (1985). Knowledge vs. Nimby: Assessing Florida's Strategy for Siting Hazardous Waste Disposal Faci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V. 14, N. 1.
- O'Hare, Michael. (1977). Not on My Block You D'ont: Facility Siting an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ompensation. *Public Policy*, V. 25, N. 4.
- Provis, Chris. (2000). Ethics, Deception and Labor Negoti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28, No. 2, pp. 145-158.
- Pruitt, D. G. and P. J. Carnevale.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 Buckingham MK : Open University Press
- Thompson, J. (1959).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 Tucker, A. (1965). *Game Theory and Programming, Department of Mathematics*. The Oklahoma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Stillwater.
- Weber, Edward P. (1999).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llaborative Policy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oden, Dennis L & Steel, Brent S (ed.),
Handbook of Global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New York : Basel Marcel Dekker, Inc.
- Yankelovich, Daniel. (1999). The Magic of Dialogue: Transforming Conflict into Cooperation. Denny, Julie(1999). *Magic of Dialogue*. AMACOM: American Management Assen.

姜成哲: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School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객원교수를 역임함. 강의와 연구분야는 환경정책론·인사행정론이고 주요저서·논문은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공역)」, 「환경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역)」, 「새 인사행정론(공저)」 등의 저서와 “도시주민의 환경질 분석”, “부산지역 환경산업의 발전방안”, “객관적 환경상태와 주관적 환경만족도의 비교 연구” 등 다수의 관련논문이 있다.

金相九: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환경행정, 지방자치, 도시행정 등이다. 발표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환경개선부문 지출우선순위에 관한 연구(공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방안-재정확충 관련사무를 중심으로 (공동)’, ‘지역내총생산의 영향요인과 재정확충에 관한 연구(공동)’, ‘지방정부의 항만계획기능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공동)’ 등이 있다.